



보도 일시	2023. 1. 9.(월) 11:00 < 1.10.(화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1. 9.(월)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호성 (044-203-5240)
		담당자	사무관 권정희 (044-203-5253)

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7천원 추가 인상 및 '23.2.28일까지 신청기한 2개월 연장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,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천원 추가 인상*(14.5만원→15.2만원)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.

*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'22년 추경 등을 통한 두 차례의 인상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인상으로, 동·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.7만원(夏 0.9 + 冬 11.8)에서 19.2만원(夏 4 + 冬 15.2)으로 51%(6.5만원) 인상한 것임

□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22년 12월 30일에서 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,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(www.bokjiro.go.kr)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.

□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에너지바우처 콜센터(☎1600-3190)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(www.energy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【붙임】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

- **사업개요** :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·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·도시가스 등 에너지의 구입비용을 에너지바우처로 지원
- **지원대상** : 생계·의료급여 및 주거·교육급여('22년 한시)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, 장애인, 영유아, 임산부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·추위민감계층

- **노인** (주민등록기준 1957.12.31 이전 출생자)
- **영유아** (주민등록기준 2016. 1. 1 이후 출생자)
- **장애인** (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)
- **임산부** (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)
- **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** (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」중증질환[별표3], 희귀질환[별표4], 중증난치질환[별표4의2]을 가진 사람)
- **한부모가족** 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)
- **소년소녀가정** (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)

- **지원금액** :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 18.5만원 (夏 4 + 冬 14.5) → 19.2만원 (夏 4 + 冬 15.2)*

* 금번 지원단가 추가 인상분은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, 실물카드 방식의 경우 '23.1.18일부터 적용됨

- **신청기간** : '22. 5. 25. ~ '23. 2. 28.
- **사용기간** : (하절기) '22. 7. 1. ~ 9. 30. (동절기) '22. 10. 12. ~ '23. 4. 30.

□ **지원절차**

-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 (www.bokjiro.go.kr)에 신청
- 지원 대상가구는 국민행복카드*로 전기·가스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,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
- * 국민행복카드 : 에너지바우처 등 17종의 국가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(보건복지부)

